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5.12.9.)

#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최인식]

# 목 차

1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4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5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6	거창군 수입증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7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8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54
9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0
10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66
11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74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81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2. 개정이유

- 현재 조성 중인 승강기전문 농공단지 구역이 2개의 법정리(남상면 대산리와 월평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편입통합하여 향후 토지관리 및 행정재산관리 시 불편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행정행위를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법정리 구역 일부를 조정함(안 별표 1)
  - 종래 남상면 월평리 1380, 1380-2, 1380-4, 1380-5, 1380-11, 1382-1, 1518, 1518-2, 1520-1, 1520-2, 1526-1, 1527, 1527-1, 1527-2, 1527-3, 1528-1, 1532-2, 1532-3, 1539-1, 1539-4, 1540, 1540-2, 1545-2, 1545-3, 1545-4, 1601-3, 1601-5, 산149-3, 산149-4, 산180, 산185-2, 산193-7, 산193-8, 산193-9, 산194, 산202번지 ⇒ 남상면 대산리로 편입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1) 예고기간 : '15. 10. 19. ~ 11. 08.
    -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현재 조성 중인 승강기전문 농공단지 구역이 2개의 법정리(남상면 대신리와 월평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편입·통합하여 향후 토지관리 및 행정재산관리 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2. 개정이유

- 변화하는 미디어환경과 정부3.0 추진에 맞춰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참여의 기회 확대와 양방향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소셜미디어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원고료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및 게시판 게시자료 삭제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 다. 전자우편ID보급 조항 삭제(제5장, 제14조·제15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4조
- 「전자정부법」 제9조·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나. 예산조치 : 2016년 예산 29,568천원 반영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10. 31. ~ 11. 2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참여의 기회 확대와 양방향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원고료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3.8.6.>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 관련 법령, 민원사무 관련 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과 관련된 정보와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실는 사항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자의 참여 확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참여하여 토론, 건의,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건의 및 정책제안 등을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전자정부서비스의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35조(전자민원창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접수·이송 및 처리 결과의 통지
2. 처리 진행상황, 처리기간 연장통지 등 민원처리상황의 안내
3. 법령·민원사무편람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민원 관련 정보의 제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 〔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2. 개정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방재정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법령개정에 따른 주무부처 변경함(안 제4조·제11조·제18조)
  - 행정안전부 ⇒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 나. 지원대상사업 삭제함(안 제15조제3항, 제17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삭제(안 제17조제1항·제2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운영비 명시적 규정)에 해당하여 삭제함(안 제17조제3항)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16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전자정부법」 제5조, 제65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32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10. 31. ~ 11. 2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제6조제3항)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 안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서 정보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제6조(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위원 위촉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40호, 2015.6.22., 일부개정]

-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의 창달
2. 정보격차의 해소
3.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 「전자정부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 15. (생략)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3.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4. 전자적 행정관리
5.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및 안전성 확보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7. 정보자원의 통합·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8. 전자정부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
9.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
1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11.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12. 그 밖에 정보화인력의 양성 등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의 역사,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지역정보서비스 개발과 보급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기반 조성
3. 정보화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
4.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통합관리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5.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14.]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 ⑥ (생략)

[본조신설 2014.5.28.]

# 〔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와 지방세연구원의 합동작업으로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축조 완료된 기본안이 내려옴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지연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군민의 혼란과 불편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조문 신설(안 제4조)
  -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를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
- 나. 지방세관계법과 중복된 조항 삭제  
(현행) 51개 조문 ⇒ (개정) 9개 조문

- 다. 서류 송달의 방법(안 제5조)
- 다. 교부금전의 예탁(안 제6조)
- 라.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안 제7조)
- 마. 지방세심의위원회(안 제8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자동차등록령」 제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1) 예고기간 : '15. 10. 28. ~ 11. 17.
    -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혼란과 불편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를 신설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를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토록 하였고

안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에서는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및 전자송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에서는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5.5.18.] [법률 제13293호, 2015.5.18., 일부개정]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1.>

⑥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

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 [제목개정 2014.1.1.]

**제95조(채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채납액에 대하여 채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채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채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채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제140조제3항에 따른 채납자의 채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7.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7.24., 타법개정]

**제11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 □ 「자동차등록령」

[시행 2015.10.7.] [대통령령 제26380호, 2015.7.6., 일부개정]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19.]

### □ 「지방세법」

[시행 2015.7.24.] [법률 제13427호, 2015.7.24., 일부개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양수인에게 부과·징수하는 경우
5. 제5항에 따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

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15.7.24.>

[시행일 : 2016.1.1.] 제128조제2항 , 제128조제5항

####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5.7.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7.24., 타법개정]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는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로 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 소재지로 본다.

②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 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적어 시장·군수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1월 중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 일시 납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는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

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3.1.1.>

④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의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제2기분의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 행 정 자 치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송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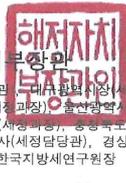
1.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일부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지연 반영되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우리부와 각 사·도, 지방세연구원은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여 2차에 걸친 합동작업 등을 통해 기본(안)을 축조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최종 축조가 완료된 기본(안) 등을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자치법규 개정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1.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결과

2. 자치법규 기본(안). 끝.



행정자치부 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세제과장), 부산광역시(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세정담당관), 광주광역시(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세정과장), 울산광역시(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세정담당관),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주우관 김기명 행정사무관 정광량 행정사무관 대결 2015. 8. 28. 지방세정책과 전결 정유근 장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책과-3494 (2015. 08. 28.) 접수 세정과-11255 (2015. 08. 28.)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gaha.go.kr

전화번호 02-2100-3597 팩스번호 02-2100-3930 / kmkmimim@mogaha.go.kr / 비공개(5)

새로운 지방자치, 주민이 주인입니다.

## 지방세 자치법규(조례·규칙) 기본(안) 축조 결과

### 추진배경

-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11년) 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 반영 및 위임 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 발생
- 일부 지자체에서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필요성 제기
  - ※ 경기[세정과-14281('15.6.22), 지방세 관련 조례 전국 합동작업 건의], 전남, 전북 등

### 그 간의 추진사항

-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7.2) :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방향\* 등 논의
  - \* 지자체별 기본(안) 전부 축조, 기본(안)의 간소화 등
- 1차 축조 합동작업(7.22.~7.24/수원) : 자치법규 기본(안) 초안 마련
- 기본(안) 초안에 대한 지자체 보완의견 수렴(7.31.~8.14)
- 2차 축조 합동작업(8.24.~8.27/수원) : 수렴된 보완의견 반영 및 자구 수정 등 자치법규 최종 기본(안) 마련
  - ※ 축조작업 시·도 주도, 행자부 및 지방세연구원은 법률자문 등 지원

### 축조결과

- 지자체별(특·광역시, 도, 시·군·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 서식) 기본(안) 25개 축조
  - 조례 8, 규칙 8, 서식 8, 기타 1 - 상세목록 붙임 참조
  - ※ 「지특법」 관련 자치법규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반기 별도 추진

### 행정사항

- 자치법규 기본(안) 반영여부 지자체 자율 결정
  - 다만, 개정시에는 각 지자체의 특성 등을 감안한 보완작업 선행
- 규제관련 사안(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조정)은 반드시 하반기 개정 완료

# 〔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와 지방세연구원의 합동작업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축조 완료된 기본안이 내려옴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지연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군민의 혼란과 불편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항 삭제(안 제2조)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행) 25조문 ⇒ (개정) 15조문으로 축조
- 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확인·재기재하던 것을 삭제하여 본문을 간결화함.(안 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15조)
  -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 적용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1) 예고기간 : '15. 10. 28. ~ 11. 17.
    -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혼란과 불편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항 삭제(안 제2조)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확인하고 재 기재 하던 것을 삭제하여 본문을 간결화 함(안 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15조)

- 개정조례와 관련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세법」

[시행 2015.7.24.] [법률 제13427호, 2015.7.24., 일부개정]

**제53조(미납세 반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 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②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 ③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7.24.>

## 제2절 균등분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 2. 법인의 표준세율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

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3.24.>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해당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의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전문개정 2014.1.1.]

[시행일 : 2017.1.1.] 제92조제2항

###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18조의3·제118조의4·제118조의6·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제목개정 2013.1.1.]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초과	24원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text{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times 5/100)(n - 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송부

---

1.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일부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지연 반영되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우리부와 각 사·도, 지방세연구원은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여 2차에 걸친 합동작업 등을 통해 기본(안)을 축조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최종 축조가 완료된 기본(안) 등을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자치법규 개정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1.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결과

2. 자치법규 기본(안). 끝.



행정자치부 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세제과장), 부산광역시(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세정담당관), 광주광역시(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세정과장), 울산광역시(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세정담당관),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주우관 김기명 행정사무관 정광량 행정사무관 대결 2015. 8. 28. 지방세정책과 전결 장 정유근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책과-3494 (2015. 08. 28.) 접수 세정과-11255 (2015. 08. 28.)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gaha.go.kr

전화번호 02-2100-3597 팩스번호 02-2100-3930 / kmkmimim@mogaha.go.kr / 비공개(5)

새로운 지방자치, 주민이 주인입니다.

## 지방세 자치법규(조례·규칙) 기본(안) 축조 결과

### 추진배경

-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11년) 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 반영 및 위임 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 발생
- 일부 지자체에서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필요성 제기
  - ※ 경기[세정과-14281('15.6.22), 지방세 관련 조례 전국 합동작업 건의], 전남, 전북 등

### 그 간의 추진사항

-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7.2) :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방향\* 등 논의
  - \* 지자체별 기본(안) 전부 축조, 기본(안)의 간소화 등
- 1차 축조 합동작업(7.22.~7.24/수원) : 자치법규 기본(안) 초안 마련
- 기본(안) 초안에 대한 지자체 보완의견 수렴(7.31.~8.14)
- 2차 축조 합동작업(8.24.~8.27/수원) : 수렴된 보완의견 반영 및 자구 수정 등 자치법규 최종 기본(안) 마련
  - ※ 축조작업 시·도 주도, 행자부 및 지방세연구원은 법률자문 등 지원

### 축조결과

- 지자체별(특·광역시, 도, 시·군·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 서식) 기본(안) 25개 축조
  - 조례 8, 규칙 8, 서식 8, 기타 1 - 상세목록 붙임 참조
  - ※ 「지특법」 관련 자치법규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반기 별도 추진

### 행정사항

- 자치법규 기본(안) 반영여부 지자체 자율 결정
  - 다만, 개정시에는 각 지자체의 특성 등을 감안한 보완작업 선행
- 규제관련 사안(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조정)은 반드시 하반기 개정 완료

# 〔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방안” 권고 및 행정자치부의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사용 규정을 폐지하고
- 전자 수입증지의 사용, 규격, 모양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 3. 주요골자

- 가. 전자수입증지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나. 전자수입증지 사용 명문화(안 제3조)
- 다. 전자수입증지의 표시·규격·모양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라. 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과 변상책임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마.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금고에 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기 위한 부칙 신설(부칙 제2조)

사. 종이 수입증지의 사용 폐지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 인수 및 보관, 출납, 판매 등 종이 수입증지 관련규정 삭제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137조(수수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0. 15. ~ 11. 0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방안” 권고 및 행정자치부의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사용 규정을 폐지하고

○ 전자 수입증지의 사용, 규격, 모양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개정조례와 관련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 6. (생략)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10.6.] [대통령령 제26572호, 2015.10.6., 일부개정]

**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서 이를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消印)하고 따로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毀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25.]

**제5조(변상금액의 감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사무의 집행 내용, 손해발생의 원인, 회계관계직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노력 등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계관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3.25.]

**제6조(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감독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장
  4. 해당 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감독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장
- ② 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직위별로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자는 감사원이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감면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⑤ 감사원의 판정에 따른 변상명령서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가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3.3.] [대통령령 제26126호, 2015.3.3., 일부개정]

**제26조(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 ③ (생략)

[별표1] <개정 2011.12.2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보존기간	대상기록물
5년	1.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br/>(10년 이상 보존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 관련 단위과제에 포함되는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따른다)</li> <li>3.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사상·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li> <li>4. 다른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li> <li>5. 그 밖에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li> </ol> |
|---|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2.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징수방법을 변경함(안 제5조)
- 나.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 개선함(안 제6조)
- 다. 수수료 감면 대상 중 법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 개선함(안 제7조)
- 라.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 변경함(안 별표 1의2)
  - 건설기계등록원부 관내·외 구분없이 ⇒ 300원으로 통일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사항 반영(14.11.07.개정)
- 마. 정보공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별표 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12.10.개정)별표의 개정사항 반영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 별표 23,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 : 관련부서(민원봉사과 등) 의견 수렴

###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0. 27. ~ 11. 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징수방법)에서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서는 기납부수수료는 반환  
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2항에서는 관내에 주소를 둔 비영  
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 교육기관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에만 정보공개수수료를 감면하던 것을  
관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개정조례와 관련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2.10.] [행정자치부령 제8호, 2014.12.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문 공개 대상인 정보의 경우에도 이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MB(메가바이트)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

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 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5.28.]

[별 표] <개정 2014.12.10.>

### 수 수 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시간 이내: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ul> </li> <li>-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li> </ul>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li> </ul> </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li> <li>○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li> <li>○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li> </ul> </li> </ul> </li> <li>○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마다 5,000원</li> </ul> </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마다 3,000원</li> </ul> </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5,0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마다 3,000원</li> </ul> </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6,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 200원</li> <li>5"×7" 300원</li> <li>8"×10" 400원</li> </ul> </li> </ul> </li> </ul> </li> </ul>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0컷 기준)1화: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li> </ul> </li> </ul> </li> <li>○ 슬라이드의 시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200원</li> </ul> </li> <li>-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150원</li> </ul> </li> </ul> </li> </ul>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1,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3,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시간 이내 :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ul> </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 1,500원</li> <li>·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ul> </li> <li>-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li>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li> <li>-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li> <li>-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li> <li>-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9.25.] [국토교통부령 제232호, 2015.9.25., 일부개정]

제93조(수수료)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9.] [국토교통부령 제138호, 2014.11.7., 일부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3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갑, 을부) 또는 초본(갑부)의 교부신청

열람 1건에 대하여 100원  
 등본 1건에 대하여 500원  
 초본 1건에 대하여 5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

⇒ <개정전>

[별표 23] <개정 2008.2.12>

수수료(제93조관련)

종 목	금 액
1.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신청	1대에 대하여 4,000원
2. <삭제>	
3.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1대에 대하여 1,000원
4. 건설기계 등록말소신청	1대에 대하여 1,000원
5.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갑, 을부) 또는 초본(갑부)의 교부신청	열람 1건에 대하여 100원 등본 1건에 대하여 500원 초본 1건에 대하여 500원 (등록지내의 기관외의 기관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열람시에는 1,000원, 등초본을 교부시에는 각각 1,500원)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을 처리한 결과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

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0.7.] [국토교통부령 제237호, 2015.10.7., 일부개정]

제156조(수수료액) ①법 제76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0.2.18.>

② ~ ④ (생략)

[별표 30] <개정 2010.11.25>

수수료(제156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1.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가.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1건에 대하여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31.>

〔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2. 요구이유

- 거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업무로 2013년~2016년 기간 만료로 인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창시니어클럽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하기 위함

## 3. 운영실태

- 가. 시설명 : 거창시니어클럽
-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길 138
- 다. 규모 : 사무실 90㎡, 교육장 75㎡(작업장 별도)
- 라. 사업내용 : 거창시니어클럽운영
- 마. 위탁대상 사무
  - 운영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적합일자리 창출 및 보급
    -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 수행

- 그 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관하여 위탁 한 사항
- 바. 위탁방법 : 공모 또는 재 위탁
- 사. 선정방법 : 운영실적 평가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아. 소요예산
  - 거창시니어클럽운영비 지원 :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비용의 부담)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4.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현 거창시니어클럽은 2013년 최초 협약이후 관내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일자리 개발·보급·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하였으며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업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함이 타당 하리라 사료됨

### 나.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운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다. 향후계획

- 2015. 12월 초 : 위탁공모 또는 거창시니어클럽 재협약 신청서 접수
- 2015. 12월 중 : 선정위원회 심의
- 2016. 3월 중 : 거창시니어클럽 위·수탁 협약 체결

라. 예산조치

○ 2016년 거창시니어클럽 운영비 본예산 반영

마.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계획 : 따로 붙임

## 5.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관내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일자리 개발·보급·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업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운영)와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등에 따라 위탁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거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

거창시니어클럽은?

노인사회활동전담기관으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기관

#### 1. 법적근거 및 위탁사무

#####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운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013.6.4. 개정, '13.12.5 시행)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사업주체별 주요 업무 및 역할

- 보건복지부 : 시니어클럽 정책방향 수립 및 운영지침 마련
- 지방자치단체 : 지정 및 취소, 예산 및 행정지원, 지도·점검 등
- 시니어클럽 :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여건조성

● 기존 위탁 현황

- 운영법인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위탁사무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적합일자리 창출 및 보급  
그 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관하여 위탁 한 사항
- 위탁기간 : 2013. 3. 21 ~ 2016. 3. 20(3년)

## II. 거창시니어클럽 개요

### 1. 기본현황

● 기관현황

기관명	소재지	시설장	직원수	시설 규모	수탁법인
거창 시니어클럽	거창읍 중앙로 1길 138	문태생 (선용)	- 정원: 5명 - 현원: 5명 (전담인력 5명 별도)	- 사무실 : 90m <sup>2</sup> - 교육장 : 75m <sup>2</sup> (작업장 별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2.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현황

(2015년)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배정 일자리(명)	예산액 (천원)	비고
총계	18개		499	967,740	
공익형	불법광고물 제거 및 재활용 활동	불법 전단지 및 광고물 수거 사업	6	11,520	
	근린시설 지원활동	스포츠공원 등 관리 및 환경정화	10	19,200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급식보조 및 청소사업	66	128,040	

	지역공원관리사업	죽전공원 관리 및 청소 사업	8	15,360	
	지역환경개선사업	거창군 관내 청소 및 환경정화	85	163,200	
복지형	지역아동센터연계사업	이동 식사 및 예절 교육 사업	24	47,040	
교육형	경로당활성화 지원사업	경로당회계 보조하는 사업	55	107,800	
	13세대 강사파견사업(짚공예)	전통 짚공예 만들기 교육사업	5	9,800	
	보육교사도우미사업	유치원 급식보조 및 청소 사업	8	15,680	
시장형	웃음공동작업단	단순작업을 통해 작업하는 사업	40	72,000	
	실버카페(cafe 웃음)	커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8	16,000	
	천연비누제조판매사업(거창버블플라워)	천연비누 제조하여 판매 사업	8	16,000	
	소담도시락배달사업	도시락 제조 판매 배달사업	6	12,000	
	전통부각제조사업(소담 부각)	전통부각 제조하여 판매사업	10	20,000	
인력파견형	고운손일손도우미	일자리 파견 및 연결하는 사업	10	1,500	
전국형	홀로사는어르신안부확인	독거노인 안부 확인 및 요쿠르트 배달	110	213,400	
	독거노인케어사업	독거노인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사업	35	89,600	
지역형(기타)	전통시장활성화 도우미 활동	전통시장 홍보 및 청소사업	5	9,600	

### III. 재·위수탁 운영계획

- 위탁기간 : 2016. 3 ~2019. 3(3년)
- 수탁법인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심의, 결정

### IV.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

- 선정위원회

- 심의위원 : 최소6명~최대9명 구성
- 위원구성 : 관련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심의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의내용 : 現법인에 대하여 사업실적, 사업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배점표에 따라 심의

## V. 향후 추진계획

- 2015. 11월 중 : 거창시니어클럽 재협약(위탁기간 갱신) 여부 통보
- 2015. 12월 중 : 거창시니어클럽 재협약 신청서 접수
- 2015. 12월 중 : 선정위원회 심의
- 2015. 12월 중 : 군의회 상정(동의)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2016. 3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2. 요구이유

- 문화적 차이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생계안정과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함

## 3. 운영실태

- 위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위탁기간 : 3년(이후 평가 심의를 통해 3년 이내 위탁기간 갱신)
  - ※ 연중 동절기인 1, 2월을 제외한 10개월간 사업 추진
- 수탁기관(업체) 자격기준
  - 채용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업체 및 법인단체
  - ※ 연간 10개월 이상 5~10명 정도의 결혼이민자 여성을 지속적으로 채용 관리가 가능한 곳

○ 수탁기관(업체) 선정

- 공개모집(홈페이지를 통한 공고)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위탁 사업내용 및 조건

- 선정 업체와 협약체결로 고용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근로임금의 50%(1인 월 50만원 이내)를 채용 장려금으로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채용(연 5~10명 정도) : 신규 채용 시 공개 채용 원칙
- 채용기간 만료 후 업체의 자체평가를 거쳐 계속 채용 장려
-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고용주와 근로자 쌍방 협의
- 근무내용 : 결혼이주여성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업무 수행

○ 예 산 액 : 금 30,000천원

## 4.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새로운 경제활동인구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을 민간 위탁사업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

### 나.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및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다. 향후계획

- 2015. 12월 중 : 군 의회 위탁 동의
- 2016. 1월 중 : 위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회개최)
- 2016. 2월 중 : 협약체결(협약내용 공증)

라. 위탁운영계획 : 따로 붙임

## 5.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생계안정과 조기정착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다문화가족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현재 거창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임사무(다문화가족법 제12조4항 5호: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위탁)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및 「거창군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운영 계획

- 문화적 차이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생계안정과 조기 정착 지원

#### □ 관련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및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 위·수탁 운영 현황

- 현 수탁자(업체) 현황

위탁기간	기관·단체	대 표	위 치	비고
'15.3.1~12.31(10개월) (최초위탁:2011.3)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	신인재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 결혼이민자 여성 취업(고용)현황 (단위 : 명)

취업(고용)분야	취업(고용)실적-실인원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과선별작업 등	14	16	12	16	10	

- 위·수탁 내용(위·수탁 협약서 제3조)
  - 여성결혼이민자 5~10명의 근로임금 50%(1인 월 50만원 이내) 채용지원금을 위탁금으로 보조
- 운영방법 : 매년 위·수탁 협약에 의거 10개월(3~12월)간 사업 추진
  - 사과 선별 작업 등 일거리가 없는 1, 2월을 제외하고 운영
- 예산액 : 30,000천원(군비 100%)

#### □ 추진계획

- 위탁목적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일환인 여성결혼이민자 고용을

## 통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016. 3. ~ 2018. 12.(3년)
  - ※ 연중 동절기인 1, 2월을 제외한 10개월간 사업 추진
- 사업대상 및 인원
  - 수탁자(1개소) : 근로자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업체 및 법인단체
  - 고용인원(5~10명) :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연간 5~10명 정도
- 주요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상시 고용가능 업체 선정 :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업체 선정
  - 선정 업체와 협약체결로 고용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근로임금의 50%(1인 월 50만원 이내)를 채용 장려금으로 지원
  -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 : 공개 채용
  - 채용기간 만료 후 업체의 자체평가를 거쳐 계속 채용 장려
  -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고용주와 근로자 쌍방 협의
  - 근무내용 : 결혼이주여성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업무 수행
- 예산액 : 금 30,000천원

### □ 수탁기관(업체) 선정

- 수탁기관(업체) : 1개소
- 수탁 자격 기준
  - 채용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업체 및 법인단체
    - ※ 연간 10개월 이상 여성결혼이민자 5~10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채용 관리가 가능한 업체 및 법인단체
- 위탁계약기간 : 3년(이후 평가 심의를 통해 3년 이내 위탁기간 갱신)
  - 연중 동절기인 1, 2월을 제외한 10개월간 사업 추진
    - ※ 단, 위탁기간 중 법령의 제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을 따름
- 수탁기관 선정
  - 1) 선정방법 : 공개모집

## 2) 선정절차



- 선정위원회 구성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7조에 의함
- 선정기준
  - 신청기관(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위탁계약 체결 내용 : 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기간 갱신, 위탁의 취소 등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 향후 추진계획

- 2015. 12월 : 군 의회 동의
- 2016. 1월 중 : 수탁기관 공개 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회 개최)
- 2016. 2월 중 : 위·수탁 협약체결(협약서 공증)
- 2016. 3월 : 2016년 위탁 사업 추진

### □ 기대효과

-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안정과 생활기반 조성
- 다문화가족들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 및 사회통합 기여

〔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2. 3.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2. 4.

**2.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현황**

▣ 거창 승강기전문 농공단지 편입용지 용도폐지 및 처분

1) 제안사유

○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선(先) 보상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코자 함.

2) 용도폐지 및 처분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단위: 원)	처분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소 재 지	면 적 (㎡)				
토 지	62필지	303,383	5,112,292,850	‘15.12월	승강기전문 농공단지조성	거창군수

※ 감정평가 : 2015년 06월 03일 기준

○ 처분재산 현황

순번	지 번	지 목	면적(m <sup>2</sup> )	금 액 (원)
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49	전	820	27,634,000
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950	과수원	2,614	97,110,100
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393-2	답	1,221	49,511,550
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393-3	답	834	31,275,000
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393-4	목장용지	2,462	163,969,200
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394-1	답	1,008	40,874,400
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394-2	답	1,330	53,931,500
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07-2	답	300	11,475,000
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08-1	전	19	726,750
1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09	전	876	33,200,400
1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10	답	1,468	55,637,200
1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12-1	답	5,016	186,093,600
1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29	답	2,291	83,506,950
1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0	답	1,752	89,527,200
1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1	답	1,626	59,836,800
1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	목장용지	1,253	82,635,350
1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1	전	619	22,284,000
1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2	전	1,545	57,937,500
1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4	창고용지	130	8,547,500
2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5	임야	128	1,011,200
2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9	임야	29	229,100
2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10	전	1,929	69,444,000
2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11	과수원	358	12,888,000
2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12	과수원	373	13,428,000

순번	지 번	지 목	면적(m <sup>2</sup> )	금 액 (원)
2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32-13	과수원	51	1,836,000
2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65-2	임야	198	2,158,200
2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18-1	임야	132	1,102,200
2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19	임야	8,529	78,466,800
2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0-2	임야	198	2,227,500
3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1	임야	1,289	15,145,750
3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2	임야	152,686	1,389,442,600
3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3	임야	298	9,148,600
3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4	임야	298	3,412,100
3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31-2	임야	126	4,718,700
3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32-2	임야	16	126,400
3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32-4	임야	1,093	8,634,700
3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380	답	71	2,634,100
3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380-2	전	868	31,161,200
3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380-4	전	679	23,561,300
4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380-5	전	1,693	58,747,100
4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380-11	전	208	7,560,800
4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382-1	답	3,341	124,285,200
4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18-2	답	10,725	447,768,750
4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26-1	답	2,119	83,170,750
4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27	전	1,035	39,226,500
4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27-1	과수원	493	18,684,700
4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27-2	과수원	499	18,912,100
4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27-3	과수원	843	31,612,500
4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28-1	답	1,229	46,087,500

순번	지 번	지 목	면적(m <sup>2</sup> )	금 액 (원)
5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32-3	도로	41	555,550
5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39-4	목장용지	1,103	76,934,250
5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40-2	답	3,200	134,720,000
5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45-3	도로	50	677,500
5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45-4	도로	124	1,680,200
5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149-4	임야	41	1,307,900
5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180	임야	44,031	669,271,200
5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185-2	임야	198	7,415,100
5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193-7	임야	631	7,067,200
5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193-8	목장용지	27,708	414,234,600
6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193-9	임야	129	1,444,800
6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194	임야	397	4,684,600
6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202	임야	7,012	89,753,600
	합 계		303,383	5,112,292,850

### 3) 매각토지의 위치



### 3.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

### 4. 검토의견

-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선(先) 보상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9호 각 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 ⑤ 사업시행자 중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에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재 단 법 인 거 창 군 장 학 회 출 연 ( 안 ) ]  
[ 검 토 보 고 서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2. 제안이유

-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대표 이사장직무대행 이성복)
- 사 업 비 : 1,00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6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6년	1,400	1,000	1,000	-	-	1,000	-

- 사업내용
  - 거창군장학회 사무국 운영, 거창군 인재육성사업 등  
(장학사업,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중학생 거창인재스쿨 운영 등)

## 4. 부서의견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학 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 거창군의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으로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 기대

## 5.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 6. 검토의견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거창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에 따라 장학 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거창군의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서 자체 수입(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 경비 보조예산을 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 2014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는 세외수입 중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5종을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별도 세입 과목으로 분리하여 신설하면서 자체수입 감소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우리군이 해당됨.

- 따라서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였던 교육환경 개선 보조사업이 교육기관으로 지원될 수 없으므로 인해 장학회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포함하여 출연함
  - 2015년 1,400백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6년 출연계획안은 1,000백만원으로써
  - 사업내용은 장학회사무국운영 65백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450백만원(2015년 1,000백만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195백만, 중학생 거창인재스쿨 100백만, 방과후 학교지원 190백만원 등임
- ※ 참고로 거창군장학회는 2005년 12월 재단법인 장학회 설립허가 (경남도교육청 허가 제17-162호)를 받아 2009년 11월 장학기금 100억 목표를 달성하였고 2006년부터 매년 장학금 지원 사업만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장학기금은 10,565백만원임(기본재산 10,000백만, 보통 재산 565백만 / 2015년 4월현재)
- 거창군 장학회운영 세칙에 의거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제15조(교육 환경개선사업) 및 제26조 제6항(인재집중육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향후 출연금 뿐 아니라 자체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기부금 모금활동 등을 통하여 장학회사업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방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 금번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붙임 1]\_출자·출연 기관현황

####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설립근거	법 률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55-945-0015 홈페이지 : www.gcdream.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5 . 12. 16 - 장학기금 10억원 달성 : 2009년 - 사무국 개소 : 2011. 2월 - 장학금 지급(현재) : 1,811명/2,875백만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5.10.현원기준)	계 17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17명			
임 원 (15.10.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이사장 (당연직)	공석	당연직(재직기간)				
	상임이사	이○○	거창군의장	당연직(재직기간)			
	이사	강○○	거창군교육장	당연직(재직기간)			
	이사	강○○	모동기업대표	2005.12.16~2017.12.15			
	이사	이○○	전 교육위원	2005.12.16~2017.12.15			
	이사	정○○	재경경남도민회장	2005.12.16~2017.12.15			
	이사	최○○	화성건설대표	2005.12.16~2017.12.15			
	이사	신○○	거창농협조합장	2012. 8. 5~2016. 8. 4			
	이사	김○○	체육회부회장	2012. 8. 5~2016. 8. 4			
	이사	조○○	거창대학교수	2012. 8. 5~2016. 8. 4			
	이사	최○○	상공협의회장	2013.12.16~2017.12.15			
	이사	도○○	거창홍사단대표	2013.12.16~2017.12.15			
	이사	최○○	거창대겸임교수	2013.12.16~2017.12.15			
	이사	강○○	거창위생대표	2013.12.16~2017.12.15			
	이사	윤○○	거창중앙고교장	2013.12.16~2016. 8. 4			
	감 사	강○○	거창군의원	2011.12.16~2015.12.15			
	감 사	이○○	이재민세무사대표	2013.12.16~2015.12.15			
주요기능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						
자본금 (단위:백만원)	11,314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0,690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11,314 (자산 총액)
	예산액	11,414	11,169	12,030		부채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690		자본	11,314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030			716		11,314	

## [붙임 2]\_관계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일 : 2014.12.31)

( 제정) 2005.10.05 조례 제1761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2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4조(임원)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와 감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거창군수, 거창군 의회의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이사회) ① 장학회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 ①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재정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1. 2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1. 27.

### 2. 제안이유

- 2016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3. 출연개요

####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3,085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대 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사 업 비 : 3,085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6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6년	3,085	3,085	3,085	-	-	3,085	-

- 사업내용 :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지역 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

#### 4. 부서의견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이 필요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도시계획·교통·환경 등 시·도연구원의 정책 제언은 관련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방세제 개편은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그 권한이 정부와 국회에 있으므로 특정 시·도연구원과 유기적 협력이 어려움
- 지방세연구원은 재정분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이므로 행자부의 직접 출연은 재정분권에 소극적인 기재부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움

#### 5.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 기타 참고자료(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 붙임 3

## 6. 검토의견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의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전 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거창군 3,085천원)를 출연하는 것으로
- 금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붙임 1]\_출자·출연 기관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전화번호 : 02-2071-2720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15.09.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43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27명 (5명) *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과견되거나 당연직은 (지자체 임원 등) 공무원 수를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 ) 로 표시) ※ 예 : 12명 (4명)		16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 원 (‘00.12.3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허○○	(전)○○광역시장		2014.03.28~2017.03.27		
	부이사장	박○○	○○군수		2015.02.28~2016.02.27		
	원 장	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2014.04.15.~2017.04.14		
	이 사	김○○	○○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 사	박○○	○○특별시 재무국장		2015.02.28~2016.02.27		
	이 사	류○○	○○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2015.02.28~2016.02.27		
	이 사	김○○	○○도 기획조정실장		2015.02.28~2016.02.27		
	이 사	이○○	○○도 자치안전국장		2015.02.28~2016.02.27		
	이 사	이○○	○○구 부구청장		2015.02.28~2016.02.27		
	이 사	김○○	○○시 부시장		2015.02.28~2016.02.27		
	이 사	정○○	○○시 부시장		2015.02.28~2016.02.27		
	이 사	박○○	○○대 교수		2015.02.28~2017.02.27		
	감 사	이○○	○○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2,836 (설립이후 직전연도말까 지 지자체가 출자·출연 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5,380 (자산 총액)
	예산액	7,625	8,315	7,518		부채	21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6,587	7,712	7,198		자본	5,168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668			6,599		1,069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5.5.18] [법률 제13293호, 2015.5.1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7.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7.24.,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1.>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 [붙임 3]\_기타 참고자료

지역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한 관련자료 송부

---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 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및 2016년도 예산편성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 출연금 예산편성 관련자료(별첨자료 포함). 끝.

##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세제과장), 대구광역시(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세정과장), 광주광역시(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세정과장), 울산광역시(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세정담당관),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종로구청장(세무1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 용산구청장(세무1과장), 성동구청장(세무1과장), 광진구청장(세무1과장), 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 중랑구청장(세무1과장), 성북구청장(세무1과장), 강북구청장(세무과장), 도봉구청장(징수과장), 노원구청장(재무과장), 은평구청장(세무1과장),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 마포구청장(세무1과장), 기획재정부(재무과장), 강서구청장(재무과장), 구로구청장(징수과장), 금천구청장(세무1과장), 영등포구청장(세무과장), 동작구청장(세무1과장), 관악구청장(세무1과장), 서초구청장(세무1과장), 강남구청장(세무1과장), 송파구청장(세무1과장), 강동구청장(세무1과장),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영도구청장(세무과장), 부산진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세무1과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세무과장), 해운대구청장(세무1과장), 시하구청장(세무과장), 금정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세무과장), 연제구청장(세무과장), 수영구청장(세무과장), 사상구청장(세무과장), 기장군수(세무과장),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세무1과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세무1과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세무과장), 달성군수(세무과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재무과장),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재무과장), 광주광역시동구청장(세무과장), 광주광역시서구청장(세무1과장), 광주광역시남구청장(세무과장), 광주광역시북구청장(세무1과장),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세무1과장(수신불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세무과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세무과장), 울산광역시남구청장(세무1과장), 울산광역시동구청장(세무과장), 울산광역시북구청장(세무과장), 울주군수(세무1과장), 부산광역시(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세무팀장), 수원시장(세정과장), 성남시장(세정과장), 고양시장(세정과장), 부천시(세정과장), 용인시장(세정과장), 안산시(세정과장), 안양시장(세정과장), 남양주시(세정과장), 의정부시장(세정과장), 평택시장(세정과장), 시흥시장(세정과장), 화성시장(세정과장), 광명시장(세정과장), 파주시(세정과장), 군포시장(세정과장), 광주시장(세정과장), 김포시장(세정과), 이천시(세무과장), 구리시장(세무과장), 양주시(세무과장), 안성시장(세무과장), 포천시(세정과장), 오산시(세무과장), 하남시장(세무과장), 의왕시장(세무과장), 여주시(세무과장), 동두천시(세무과장), 양평군수(세무과장), 과천시(세무과장), 가평군수(세정과장), 연천군수(세무회계과장), 춘천시(세정과장), 원주시(세무과장), 강릉시장(세무과장), 동해시장(세무과장), 태백시장(세무과장), 속초시장(세무과장), 삼척시장(세무과장), 홍천군수(재무과장), 횡성군수(세무회계과장), 영월군수(재무과장), 평창군수(재무과장), 정선군수(세무회계과장), 철원군수(세무과장), 화천군수(재무과장), 양구군수(재정운영과장), 인제군수(세무회계과장), 고성군수(재무과장), 양양군수(세무회계과장), 청주시(세정과장), 충주시(세정과장), 제천시(세정과장), 보은군수(재무과장), 옥천군수(재무과장), 영동군수(재무과장), 증평군수(재무과장), 진천군수(세정과장), 괴산군수(재무과장), 음성군수(재무과장), 단양군수(재무과장), 천안시장(세정과장), 공주시(세무과장), 보령시장(세무과장), 아산시(세무과장), 서산시(세무과장), 논산시(세무과장), 계룡시장(세무회계과장), 당진시장(세무과장), 금산군수(재무과장), 부여군수(재무과장), 서천군수(재무과장), 청양군수(재무과장), 홍성군수(재무과장), 예산군수(재무과장), 태안군수(재무과장), 천주시장(재무과장), 군산시(세무과장), 익산시(세무과장), 정읍시장(세정과장), 남원시장(재정과장), 김제시장(세정과장), 완주군수(재정관리과장), 진안군수(기획재정실장), 무주군수(재무과장), 장수군수(재무과장), 임실군수(재무과장), 순창군수(재무과장), 고창군수(재무과장), 부안군수(재무과장), 목포시장(세정과장), 여수시장(세무과장), 순천시(세무과장), 나주시(세무과장), 광양시장(세정과장), 담양군수(세무회계과장), 곡성군수(재무과장), 구례군수(재무과장), 고흥군수(재무과장), 보성군수(재무과장), 화순군수(재무과장), 장흥군수(재무과장), 강진군수(세무회계과장), 해남군수(세무회계과장), 영암군수(재무과장), 무안군수(재무과장), 함평군수(재무과장), 영광군수(세무회계과장), 장성군수(재무과장), 완도군수(재무과장), 진도군수(세무회계과장), 신안군수(세무회계과장), 포항시장(세정과장), 경주시(세정과장), 김천시(세정과장), 안동시장(세정과장), 안성시장(세정과장), 안동행정안전과(세무과장), 영주시(세무과장), 영천시(세정과장), 상주시(세정과장), 문경시장(세무과장), 경산시(세무과장), 군위군수(재무과장), 의성군수(재무과장), 청송군수(재무과장), 영양군수(재무과장), 영덕군수(재무과장), 청도군수(재무과장), 고령군수(재무과장), 성주군수(재무과장), 칠곡군수(세무과장), 예천군수(재무과장), 봉화군수(재정과장), 울진군수(재무과장), 울릉군수(재무과장), 창원시장(세정과장), 진주시(세무과장), 통영시장(세무과장), 사천시(세무과장), 김해시장(회계과장), 밀양시장(세무과장), 거제시장(세무과장), 양산시(세무과장), 의령군수(재무과장), 함안군수(재무과장), 창녕군수(재무과장), 고성군수(재무과장), 남해군수(재무과장), 하동군수(재무과장), 산청군수(재무과장), 함양군수(재무과장), 거창군수(재무과장), 함천군수(재무과장), 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

주임	행정지원부장	경영지원본부 2015. 11. 10. 장
협조자		
시행	경영지원본부-1682 (2015. 11. 10.)	접수 재무과-23365 (2015. 11. 11.)
우	150-8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0 / http://www.kilf.re.kr	
전화번호	02-2071-2723 팩스번호 02-2071-2722 / s1h11@kilf.re.kr / 대국민 공개	